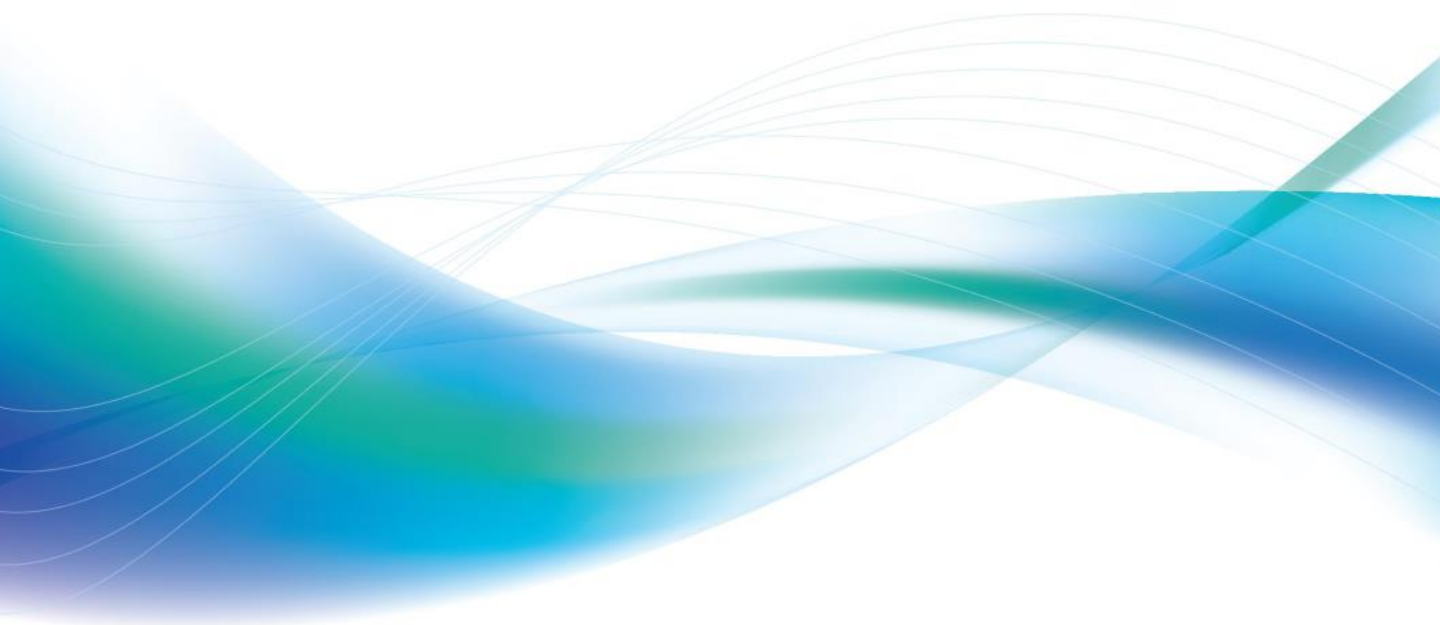


# 방침 및 절차

(주)스템텍코리아

For KR Business Partnerships

2017년 8월



# 목차

<b>1 - 개요</b>	6
1.1 - 준거 문서	6
1.2 - 방침 및 절차의 목적	6
1.3 - 준거 문서의 변경	7
1.4 - 지연	7
1.5 - 분리조항	7
1.6 - 권리포기	7
1.7 - 집행력	7
<b>2 - 스템텍 독립 비즈니스 파트너(IBP)의 자격</b>	8
2.1 - 신청서	8
2.2 - 신청서의 승인	8
2.3 - 스템텍 IBP팩	8
2.4 - ID 번호	8
2.5 - 생년월일	8
2.6 - 제품 구매	8
2.7 - IBP 혜택	8
2.8 - 복수 신청서	9
2.9 - 스템텍 IBP의 활동	9
2.10 - 법정 연령	9
2.11 - 가구 내 복수 IBP	9
2.12 - 가족 구성원 및 관계인의 행위	10
2.13 - 공동 사업자	10
2.14 - IBP 계약 연간 갱신	10
2.15 - 갱신 수수료	10
2.16 - 독립 계약자 신분	10
2.17 - 면책 조항	10
2.18 - 소득세 신고	11
2.19 - 법률 준수	11
2.20 - 스템텍에 위해를 주는 행위	11
2.21 - 독점 지역 금지	11
2.22 - 타 비즈니스 유인 금지 및 경쟁제품 판매 행위	12
2.23 - 다운라인 활동 리포트	12
2.24 - IBP 계약 변경	13
2.25 - 주소 또는 전화번호 변경	13
2.26 - 공동 사업 IBP 추가	13
2.27 - 비활동	13

<b>3 - 후원활동 &amp; 교육지원</b>	14
3.1 - 스폰서 활동	14
3.2 - 지속적인 교육	14
3.3 - 지속적인 판매 활동	14
3.4 - 다운라인 그룹과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비방 금지)	14
3.5 - 방침 및 절차 위반 사례 신고	14
3.6 - 추천 스폰서/배치 스폰서의 변경	15
3.7 - 교차 후원	15
3.8 - 자발적 계약 해지 및 재등록	15
3.9 - IBP 사망으로 인한 자격 상속	15
3.10 - 스템텍 IBP 사이의 계약	16
3.11 - 비밀준수 및 조직도 리포트	16
3.12 - 회사에 대한 존중	16
3.13 - 이혼으로 인한 스템텍 IBP 자격의 해지	17
<b>4 - 상표, 자료 및 광고</b>	17
4.1 - 일반 규정	17
4.2 - 상표 및 저작권	17
4.3 - 자료	18
4.4 - 다중 리크루팅, 판매 테크닉 및 인터넷 웹사이트의 사용	18
4.5 - 카탈로그 및 잡지 광고 및 프로모션	18
4.6 - 인쇄물을 통한 광고	18
4.7 - 전화번호부 등록 및 디스플레이 광고	19
4.8 - 전자 매체	19
4.9 - 보증 홍보	19
4.10 - 언론매체 및 언론매체의 취재	19
4.11 - 스템텍 직원 사칭	19
4.12 - 텔레마케팅	19

<b>5 - 스템텍 IBP 자격 및 보상</b>	19
5.1 - IBP 계약서	20
5.2 - 영업 상의 월별 기준	20
5.3 - 후원수당 지급일	20
5.4 - 후원수당 자격	20
5.5 - 제품 및 마케팅 자료 반품과 관련한 조정	20
5.6 - 오류 및 누락	20
<b>6 - 국제 사업</b>	20
6.1 - 국제 마케팅 활동	20
6.2 - 해외에서의 판매 및 비즈니스 구축 활동	21
<b>7 - 제품의 구매 및 판매, 대금 지불 및 배송</b>	21
7.1 - 과도한 재고 구매의 금지	21
7.2 - 교차라인 및 다운라인에 대한 판매	21
7.3 - 제품의 판매	21
7.4 - 제품 대금 지불	21
7.5 - 신용카드 및 당좌계좌의 3자 사용 제한	21
7.6 - 제품 및 마케팅 자료의 정시 인도	22
7.7 - 제품의 손상	22
7.8 - 가격 변경	22
7.9 - 소매 가격 및 영수증	22
7.10 - 소득세 및 판매세	22
7.10.1 - 소득세	22
7.10.2 - 판매세	23
7.11 - 소매점	23
7.12 - 전시 공간	23
7.13 - 일반주문 정책	24
7.14 - 이월주문 정책	24
7.15 - 주문의 확인	24
7.16 - 보증금	24

<b>8 - 제품의 반품 및 환불</b>	-24
8.1 - 소매 고객에 의한 반품	24
8.2 - IBP에 의한 반품 (자가소비를 위해 구매한 제품)	25
8.3 - 반품 절차, 반품 제품 승인	25
<b>9 - 계약 해지 및 비갱신</b>	-25
9.1 - 비자발적 해지	25
9.2 - 자발적 해지	26
9.3 - 비갱신	26
9.4 - 비활동으로 인한 해지	26
9.5 - 해지 또는 비갱신의 효력	26
<b>10 - 분쟁의 해결 및 징계 조치</b>	-26
10.1 - 불평 불만	26
10.2 - 징계 조치	26
<b>11 - 일반 규정</b>	-27
11.1 - 제품의 효능 주장	27
11.2 - 수입에 대한 주장	27
11.3 - 백오피스 접근	27
11.4 - 관할권 및 관할지역	27
11.5 - 중재	28
11.6 - 전체 계약	28

# 1 - 개요

## 1.1 - 준거 문서

(주)스팀텍코리아(이하 '스팀텍' 또는 '회사'라고 함)의 준거 문서(이하 '계약서'라 함)는 현행의 방침 및 절차, 향후 회사의 재량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수정·보완 사항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1. IBP 등록신청서(독립 비즈니스 파트너 등록신청서)/계약서와 관련 조건 (이하 '신청서' 또는 'IBP 계약서'라 함)
2. 현행의 방침 및 절차를 포함하여 향후 회사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는 수정·보완 사항을 포함한 방침 및 절차
3. 회사 재량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는 수정·보완 사항을 포함한 스팀텍 보상플랜

본 방침 및 절차는 계약서의 중요 부분을 구성하며, 여기에서 사용되는 '계약서'는 위에서 정의한 준거 문서를 뜻합니다. 따라서 스팀텍의 모든 IBP는 가장 최근의 방침 및 절차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그에 따라 비즈니스 활동을 전개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규 IBP를 후원 또는 등록시킬 때, 후원 당사자인 IBP는 IBP 계약서를 체결하기 전에 신청인에게 최신 준거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 1.2 - 방침 및 절차의 목적

스팀텍은 윤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며, IBP도 윤리적으로 고객과 다른 IBP 및 회사를 대하도록 권장합니다. 스팀텍은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인 활동을 일체 금지하며, 이러한 행동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규정에 의거 처리할 것입니다. 스팀텍은 특정 IBP 활동이 비윤리적으로 행해졌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고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스팀텍은 비윤리적 행위라고 판단되는 경우, 모든 커미션 및 기타 금전적인 지급을 비롯하여 IBP 자격을 정지하거나 해지할 권한을 보유합니다. 스팀텍과 IBP의 성공 및 평판은 스팀텍 제품·서비스와 사업 기회를 전달하는 IBP의 정직성에 달려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스팀텍 IBP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동의해야 합니다.

1. 비윤리적인 비즈니스 활동이 회사, 회사의 제품, 회사가 제공하는 비즈니스 기회 및 전체 IBP의 평판과 성공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높은 정직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고객 및 다른 IBP를 대해야 합니다.
2. 회사가 제공하는 자료에 포함된 정보에 따라 스팀텍 제품/서비스를 전달하며,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승인 받지 않은 방식으로 제품의 효능에 대해 주장하지 않아야 합니다.
3. 모든 잠재 IBP에게 스팀텍의 보상플랜을 진실되고 과장없이 전달해야 합니다.
4. 자신이 후원한 IBP의 감독 및 교육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포함하여 IBP 후원과 관련된 모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5. 향후 이루어지는 모든 수정/보완 사항을 포함한 회사의 방침 및 절차, 관련 법규 및 조례를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스팀텍은 독립 IBP와 스팀텍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비즈니스 활동에 대한 표준을 정하기 위해 준거 문서를 수립하고 이에 따라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팀텍 IBP는 준거 문서에 명시된 모든 조건은 물론 스팀텍 IBP 활동과 관련 있는 법률과 규정,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IBP는 다양한 법률 체계 및 행동 규범에 익숙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스팀텍의 준거 문서를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방침 및 절차는 IBP 계약서에서 구체적으로 지칭되지 않는 경우에도 스팀텍의 공식 입장을 반영합니다. 또한 본 방침 및 절차의 위반은 IBP로서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계약 위반에 따른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1.3 - 준거 문서의 변경**

비즈니스 환경 관련 법률과 규정, 규칙 등의 개정을 고려하여 스템텍은 독점 재량에 따라 준거 문서의 신규 조항 신설, 기존의 내용의 변경 / 보완 / 폐지 / 조정 / 수정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IBP가 스템텍과 계약서에 체결하는 것은 스템텍에 의해 이루어지는 준거 문서의 변경 및 수정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준거 문서의 변경 및 수정은 해당 사항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진 후 30일 이후부터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준거 문서의 변경 및 수정과 관련한 통지는 다음을 포함하여 상업적으로 활용 가능한 합리적인 수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스템텍의 웹사이트 게시([www.stemtech.com](http://www.stemtech.com)), 이메일 발송, 스템텍의 정기 간행물, 제품 주문서, 기타 우편물 등

스스템텍 IBP가 스템텍의 비즈니스 활동을 지속하거나 스템텍이 제공하는 보상을 계속 제공받는 것은 모든 변경 및 수정 사항을 수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1.4 - 지연**

스스템텍은 합리적인 통제 범위를 벗어난 상황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이로 인한 업무 지연 또는 의무 불이행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통제 범위를 벗어난 상황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파업, 노동 쟁의, 폭동, 전쟁, 화재, 자연재해, 사망, 공급자의 공급 축소, IBP의 제품 대금과 관련된 문제 또는 법원 결정이나 정부 명령

### **1.5 - 분리 조항**

계약서의 현행 조항이나 향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수정/변경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서의 특정 조항이 무효 또는 실행불능으로 판단되는 경우, 유효하지 않은 조항이나 내용을 계약서에서 분리시켜 적용하며 나머지 모든 조건 및 조항은 지속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 **1.6 - 권리 포기**

회사는 어떤 경우에도 계약 조건 및 비즈니스 활동과 관련한 법률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스템텍이 계약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또는 IBP로 하여금 본 계약서 상의 의무 및 조건을 준수하도록 주장할 수 있는 권리나 권한을 행사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과 관련한 양 당사자의 상이한 관습 및 관행이 계약서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스템텍의 권리 포기는 회사의 책임 있는 관리자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특정 IBP의 계약 위반과 관련한 스템텍의 권리 포기가 향후 발생 가능한 계약 위반에 대한 스템텍의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다른 IBP의 권리 행사 및 의무 이행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스템텍이 특정 계약 위반과 관련하여 권리 행사를 지연하거나 생략하는 행위가 향후 발생 가능한 동일 또는 유사한 계약 위반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스템텍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1.7 - 집행력**

IBP가 스템텍을 상대로 제기하는 클레임이나 소송 사유가 계약서 상의 조건이나 조항을 집행할 수 있는 스템텍의 권리를 방해하지 못합니다.

## 2 - 스템텍 독립 비즈니스 파트너(IBP)의 자격

IBP란 독립 비즈니스 파트너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용어입니다. 독립 비즈니스 파트너는 회사의 제품을 자신을 위해 또는 고객에게 소매 판매할 목적으로 구매하고 일정한 요건을 달성함으로써 후원수당 지급기준을 통해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독립 사업자입니다. 회사의 독립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귀하는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책임이 따르며 반드시 다음의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 2.1 - 신청서

스스템텍 IBP로 활동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온라인이나 서면으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작성이 미비된 신청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서면 신청서의 경우 신청서를 IBP 센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2.2 - 신청서의 승인

신청서는 반드시 IBP 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스템텍은 신청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IBP 계약서의 유효기간은 스템텍이 계약서를 승인하는 시점(‘효력 발생일’)로부터 1년으로 합니다. 스템텍 IBP 번호를 부여 받은 신청인은 스템텍의 IBP 자격을 부여 받고 IBP로 활동할 수 있음을 뜻하는 통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2.3 - 스템텍 IBP 팩

신청자는 반드시 비즈니스 관련 양식, 트레이닝 및 마케팅 자료가 포함된 스템텍 IBP 팩(이하 ‘팩’)을 구매해야 합니다. 팩의 구매가 스템텍과의 프랜차이즈, 합자회사 및 기타 지분 관계를 시작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 2.4 - ID 번호

스스템텍이 신청서를 승인하는 경우 신청인은 스템텍의 독립 IBP의 자격을 획득하여 비즈니스 활동을 시작할 수 있으며, 스템텍은 IBP에게 개인식별번호(‘ID 번호’)를 제공합니다. 모든 스템텍 IBP는 반드시 하나의 ID번호로 활동해야 합니다. 예: 홍길동이 주 신청자이고 배우자인 성춘향이 2차 신청자인 경우, 홍길동 & 성춘향이라는 이름으로 비즈니스를 전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스템텍이 제공한 ID 번호를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업무 진행의 지연을 피하기 위해 우편 발송, 주문에는 IBP 번호를 기입해야 합니다.

### 2.5 - 생년월일

모든 스템텍 IBP는 반드시 회사에 유효한 생년월일을 제공해야 합니다. 신분증에 기재되어 있는 적절한 생년월일을 제시하지 않는 신청서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 2.6 - 제품 구매

스스템텍은 IBP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제품 구매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 2.7 - IBP 혜택

상기 2.2항에 따라 신청서가 승인되면 신청인은 스템텍의 IBP로서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스템텍 제품/서비스를 IBP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
2. 스템텍의 공식 자료에 소개되어 있는 제품에 대하여 소매 판매할 수 있는 권리
3. 스템텍 보상플랜 상의 자격 조건을 달성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



4. 다른 사람들을 스템택의 IBP로 후원하여 IBP 그룹을 구축하고, 보상플랜에 따라 승급 할 수 있는 권리
5. 주기적으로 스템택 자료와 기타 커뮤니케이션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
6. 스템택이 주최하는 지원, 서비스, 트레이닝, 동기부여 및 인성 이벤트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7. 스템택이 IBP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프로모션 및 인센티브 컨테스트/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경우에 따라 소정의 참가 비용 발생)

## **2.8 - 복수 신청서**

스스템택이 다른 스폰서 하의 동일인의 신청서를 복수로 제출 받는 경우 먼저 접수된 신청서만이 처리됩니다. 상이한 스폰서의 정보가 기재된 복수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스템택은 신청인이나 스폰서에 대한 사전 통지 없이 스폰서를 결정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 **2.9 - 스템택 IBP의 활동**

신청서가 스템택에 의해 승인된 신청인은 스템택 독립 IBP로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스템택은 IBP의 비즈니스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비즈니스 가이드라인을 권장합니다.

1. IBP는 사업자등록을 신청,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IBP는 상호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스템택은 특정 지역을 관할하는 상호등록 관청에 대한 목록을 보유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위해 해당 지역의 사업자등록 관청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3. 스템택은 모든 비즈니스 거래에 대해 정확하고 완벽한 기록을 유지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9

## **2.10 - 법정 연령**

만 19세 이상 성인이어야 스템택의 IBP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2.11 - 가구 내 복수 IBP**

IBP 개인은 오직 하나의 IBP 자격으로만 비즈니스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개인도 1개 이상의 스템택 IBP 자격을 보유하거나 그와 같은 자격으로 비즈니스 활동을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스템택은 IBP가 유언이나 유언장에 의해 비즈니스를 상속받는 경우에 한해서만 본 정책에 대한 예외를 인정합니다. 배우자를 제외하고 동일 가족의 구성원은 하나 이상의 스템택 IBP 자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가족'이란 동일한 주소에서 거주하거나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부모와 직계 자녀를 뜻합니다.

만일 배우자가 하나의 스템택 IBP 자격으로 활동하는 경우, 모두 해당 IBP 계약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스템택 보상플랜에 따른 인정 및 보상은 IBP 계약을 체결, 서명한 신청인에게만 제공됩니다. 스템택은 IBP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배우자나 개인에 대해 다음 권리를 보유합니다.

1. 스템택 제품/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 배우자의 IBP 번호를 통해 스템택으로부터 직접 제품/서비스를 구매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3. 스템택 보상플랜 상에서 제공되는 인정과 보상에 참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본 2.11항의 규정은 2.12항의 신청에 제약이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다음과 같은 규칙을 준수하는 경우 각각 자신의 비즈니스를 소유/운영할 수 있습니다.

1. 첫번째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배우자는 다른 배우자가 독립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이전에 5명의 오토십 IBP나 오토십 커스터머를 구축, 유지해야 합니다.

2. 두번째로 IBP 등록을 원하는 배우자는 첫번째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자신의 배우자에 의해 추천되어야 하며 1대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 **2.12 - 가족 구성원 및 관계인의 행위**

특정 IBP의 직계 가족 구성원이 IBP의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에 가담하는 경우 스텝텍은 동 행위를 해당 IBP의 계약 위반으로 간주하여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2.13 - 공동 사업자**

공동 사업자는 스텝텍 IBP 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텝텍은 필요 시 동업계약서를 검토할 권리를 갖습니다. 이 경우 공동사업자 양식을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공동 사업자에 소속된 개인은 스텝텍에 대한 책무에 대해 개별 책임과 연대 책임을 동시에 부담해야 하며 준거 문서의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자의 직계 가족은 독립적으로 스텝텍 독립 IBP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2.14 - IBP 계약 연간 갱신**

IBP 계약 기간은 스텝텍이 신청서를 승인한 시점으로부터 1년 6개월입니다. 스텝텍과 IBP는 계약의 갱신을 포기할 수 있으며, 이는 상대방의 갱신 거부와 관련하여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IBP의 갱신 포기 신청이 접수된 경우를 제외하고, 6개월 이내에 주문이 있는 경우, 스텝텍과의 IBP 계약은 자동 갱신되며 별도의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2.15 - 갱신 수수료**

IBP의 갱신 포기 신청이 접수된 경우를 제외하고, 6개월 이내에 주문이 있는 경우, 스텝텍과의 IBP 계약은 자동 갱신되며 별도의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2.16 - 독립 계약자 신분**

스텝텍 IBP는 자신의 IBP 활동에 책임이 있는 독립 계약자 신분으로, 스텝텍의 직원, 프랜차이즈, 공동투자자나 동업자 자격을 갖지 않습니다. IBP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자신이 스텝텍의 직원, 소유자, 프랜차이즈, 공동투자자, 동업자, 에이전트나 기타 IBP 이외의 자격을 있다고 언급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됩니다. 스텝텍 IBP는 (a)스텝텍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b)스텝텍을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c)스텝텍의 직원 자격으로 제3자에게 스텝텍을 대표할 권리를 갖지 못합니다.

스텝텍 IBP는 회사에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주장을 하거나 자신의 독립 계약자 신분이 아닌 다른 자격으로 스텝텍을 대리할 수 있는 권리를 갖지 않으며, 이 조항을 위반하는 IBP는 징계 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IBP는 독립 계약자로서 회사의 고객 서비스 부서에 연락을 취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와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올바른 태도를 유지해야 하며, 무례하거나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IBP는 기존의 또는 잠재적인 회원에게 회사의 설명회, 교육 이벤트 등의 장소에서 회사가 직접 생산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제품, 서비스 또는 사업기회를 홍보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 **2.17 - 면책 조항**

IBP는 스텝텍 제품/서비스, 스텝텍의 사업기회와 관련하여 스텝텍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자신의 구두 또는 서면 진술에 대해 전적으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IBP는 승인 받지 않은 표현이나 행위로 인해

초래된 법원 결정, 벌금, 환불, 변호사 비용, 소송 비용 및 영업 손실, 스템텍에 초래된 업무 상 손실에 대하여 스템텍의 임원, 관리자, 직원, 대리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본 조항은 계약 해지 이후에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금지 행위:** 스템텍 IBP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1. 고객에게 제품의 구매를 강요하거나 청약의 철회/취소를 하지 못하도록 위협하는 행위
2. 사실을 호도하거나 과장하는 행위, 고객을 현혹시키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제품의 구매를 권유하는 행위, 고객이 청약을 철회/취소하는 것을 막는 행위
3. IBP 등록을 위해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의무나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4. 다른 IBP를 가입시키도록 강제 규정을 부과하는 행위
5. 고객이 청약을 취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름이나 주소를 포함한 자신의 연락 정보를 변경하는 행위
6. 고객이 제품을 주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에게 제품을 전달하고 대금의 지불을 요구하는 행위
7. 고객이 제품의 구매 의사가 없다는 분명한 의사를 밝힘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

## **2.18 - 소득세 신고**

IBP는 독립 계약자로서 정부에 대한 납세 의무를 포함하여 그 어떤 사유로든 스템텍의 직원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IBP는 관련 법규를 포함하여 스템텍 독립 IBP의 활동을 관장하는 정부 및 지방자치제 법률, 법규, 조례, 규칙 및 규정 등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며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11

## **2.19 - 법률 준수**

모든 IBP는 IBP의 활동과 관련하여 관련 법규, 조례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IBP는 수입과 자영업자 세금을 포함하여 자신의 경영 및 지출과 관련한 결정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IBP는 준거 문서와 스템텍 간행물에 명시된 가이드라인의 범위 안에서 자신의 자유 의지에 따라 판매 방법과 비즈니스 활동 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 **2.19 - 법률 준수**

모든 IBP는 IBP의 활동과 관련하여 관련 법규, 조례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IBP는 수입과 자영업자 세금을 포함하여 자신의 경영 및 지출과 관련한 결정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IBP는 준거 문서와 스템텍 간행물에 명시된 가이드라인의 범위 안에서 자신의 자유 의지에 따라 판매 방법과 비즈니스 활동 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 **2.20 - 스템텍에 위해를 주는 행위**

만약 IBP가 스템텍에 위해를 주는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스템텍은 해당 IBP에게 제재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제재조치의 수준을 결정하는 권한은 전적으로 스템텍에 있으며, IBP 자격 유예조치부터 자격해지 조치까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2.21 - 독점 지역 금지**

스스템텍 독립 IBP는 스템텍 제품의 판매 및 리크루팅과 관련하여 독점 지역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거나 동 사실을 암시할 수 없습니다. 한국 내에서는 마케팅, 판매 및 리크루팅 목적 상 그 어떤 지역적 제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 2.22 - 타 비즈니스 유인 금지 및 경쟁제품 판매행위

스템텍 IBP는 스템텍 비즈니스 이외의 직접판매, 네트워크 마케팅 또는 다단계 마케팅 등의 사업에 참가하여서는 안됩니다. ‘참가’는 스템텍 외의 직접판매 회사의 사업 또는 보상플랜에 의거하여 커미션이나 보너스 기타 형태의 금전적 이득을 지급 받기 위한 목적으로 모집하는 행위나 기타 사업 개발 활동에 대한 관여 행위를 의미합니다. IBP 계약 기간 동안 스템텍 IBP나 소매 고객, 잠재고객을 다른 직접판매 사업에 참가하도록 후원하거나 모집 또는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IBP 계약 기간 동안 다른 직접판매회사를 위해 직간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스템텍 IBP나 소매 고객을 리쿠르팅/등록시키거나 그러한 행위를 시도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여기에는 스템텍 IBP나 소매 고객을 다른 직판회사의 프레젠테이션에 소개하거나 동일한 목적으로 지원하는 행위,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스템텍 IBP나 소매 고객을 다른 직접판매회사에 합류하도록 권장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잠재 사업자를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 리쿠르팅하거나 등록시키기 전에 먼저 해당 잠재 사업자가 스템텍 IBP나 소매 고객인지 확인하는 것은 전적으로 IBP의 책임입니다.

‘리쿠르팅 또는 후원활동’이라는 용어는 스템텍 IBP나 소매 고객을 다른 직판 프로그램에 등록 또는 참여하도록 직간접적인 방법이나 제3자를 통해 권유, 권장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위해 영향력을 발휘하는 행위나 시도를 뜻합니다.

스템텍 IBP는 스템텍의 경쟁 제품/서비스를 스템텍의 소매 고객이나 IBP에게 판매하거나 판매를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스템텍이 취급하는 것과 동일한 범주에 있는 제품/서비스는 경쟁 관계에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예) 건강식품은 가격, 품질, 성분 또는 영양소 함량과 관계 없이 스템텍과 동일한 제품 라인에 있으므로 경쟁 제품으로 간주됩니다.

12

IBP는 자신의 다운라인이나 형제 라인에 속한 IBP에게 스템텍 비즈니스에서 성공하도록 지원하는 도구라고 주장하는 제품/서비스나 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제3자 제품이나 서비스의 재판매를 목적으로 IBP가 다른 IBP에게 판촉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스템텍의 IBP는 회사가 제작한 품목만을 자신의 다운라인 및 형제 라인 IBP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스템텍 IBP는 스템텍 이외의 제품/서비스를 잠재 고객이나 사업자에게 스템텍과 관계가 있는 것처럼 혼동시키거나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스템텍 제품과 함께 디스플레이할 수 없습니다. 스템텍 IBP는 스템텍 사업기회나 제품/서비스를 스템텍 이외의 프로그램, 사업기회, 제품/서비스와 함께 잠재 소매 고객이나 기존 소매 고객 및 IBP에게 제안할 수 없습니다. 스템텍 IBP는 스템텍과 관련된 마케팅, 세미나나 컨퍼런스(스템텍 독립 IBP가 주최하는 이벤트 포함) 동안이나 직후에 잠재 소매 고객이나 기존 디스트리뷰터 및 IBP에게 스템텍 이외의 사업기회나 제품/서비스를 제안해서는 안 됩니다. 본 조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건강관리 전문가가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스템텍 제품을 제안하는 일은 제약 받지 않습니다.

## 2.23 - 다운라인 활동 리포트

다운라인 활동 리포트는 스템텍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IBP의 접근 및 열람이 가능하며, 비밀번호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모든 다운라인 활동 리포트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는 대외비로서 스템텍의 독점 정보이자 영업 비밀에 해당합니다. 다운라인 활동 리포트는 IBP에게 대외비를 조건으로 제공되며, 스템텍 비즈니스의 개발 및 다운라인 조직을 지원할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IBP는 비밀준수 및 비공개 조항의 준수 없이는 스템텍이 다운라인 활동 리포트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동의해야 합니다. IBP는 본인은 물론 다른 사람, 파트너, 조합, 기업이나 단체를 위해 다음을 행할 수 없습니다.

1.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다운라인 활동 리포트에 포함된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행위;
2.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다운라인 활동 리포트에 접근할 수 있는 자신의 비밀번호나 기타 접속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

3. 스템텍과 경쟁하고자 하는 목적 또는 스템텍 이외의 비즈니스를 프로모션 할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하는 행위;
4. 리포트에 포함된 스템텍 IBP나 커스터머를 유치하거나 유인하는 행위, 또는 방법을 막론하고 스템텍 IBP나 커스터머에게 스템텍과의 비즈니스 관계를 변경하도록 영향을 미치거나 유도하는 행위;
5. 다운라인 활동리포트에 포함된 정보를 다른 사람, 파트너, 조합, 기업이나 다른 단체에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스스템텍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현재 또는 이전 IBP는 다운라인 활동 리포트 원본 및 사본을 회사에 반납해야 합니다.

## **2.24 - IBP 계약 변경**

IBP는 자신의 IBP 계약서에 포함된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서면으로 이를 스템텍에 통지해야 합니다. IBP는 변경된 정보와 함께 변경내용을 표기하여 주 IBP가 IBP 서비스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IBP 계약서 상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 IBP와 공동 IBP가 모두 서명해야 합니다. 신청서의 효력 발생일은 스템텍 전산에 입력된 일로 유지되며, 전화를 통한 계약서의 정보 변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2.25 - 주소 또는 전화번호 변경**

제품, 자료 및 후원수당 등이 원활하게 전달/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스템텍의 전산에 가장 최근의 정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소지나 전화번호를 이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IBP는 IBP 서비스 부서에 변경된 정보와 함께 변경내용을 표기하여 IBP 서비스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 IBP와 공동 IBP가 모두 서명해야 합니다. 모든 변경 사항은 정확한 처리를 위해 2주 전에 스템텍에 통지해야 합니다. 정보 변경 요청의 처리는 스템텍이 통지를 접수한 후 30일이 소요됩니다. 신청서의 효력 발생일은 스템텍 전산에 입력된 일로 유지되며, 전화를 통한 계약서의 정보 변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13

## **2.26 - 공동 사업 IBP 추가**

기존의 스템텍 IBP 자격에 공동 신청인을 추가하는 경우, 주 IBP가 서명한 서면 요청서는 물론 공동사업 IBP의 신분증 번호와 서명 및 변경내용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스템텍은 주 IBP에게만 연간 소득세 내역을 제공합니다. 주 IBP가 스템텍과의 관계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주 IBP 자격의 철회와 동시에 IBP 자격이 해지됩니다. 스템텍은 자신의 재량에 따라 스템텍 IBP의 정보 변경 요청을 처리하기 전에 적절한 공증 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절차는 요청일로부터 30일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 **2.27 - 비활동**

IBP 본인이나 본인의 소매 고객이 연속된 6개월 동안 제품을 주문하지 않는 경우 비즈니스 활동을 중단한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IBP의 계약이 해지됩니다. 계약이 해지된 IBP는 백오피스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며, 개인 웹사이트의 사용권 박탈은 물론 자신의 다운라인을 영구히 상실하게 됩니다. 자신의 IBP 자격이 활동 상태를 유지하는지를 모니터링할 책임은 전적으로 독립 IBP 개개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비활동으로 인해 IBP 자격이 취소된 이후, 재등록을 위해서는 IBP 등록신청서를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 후원활동 & 교육지원

### 3.1 - 스폰서 활동

회사와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IBP ('추천 스폰서')는 다른 사람들을 스템텍에 후원,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잠재 사업자는 자신의 스폰서를 선택할 최종적인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템텍 IBP는 신규 IBP를 후원이 아닌 주문 실적의 창출을 통해서만 보상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커미션 자격을 충족시키거나 추가적인 커미션을 받기 위해 허위로 IBP를 등록시켜 판매 실적을 부풀리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스폰서는 IBP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청인과 함께 준거 문서의 조항을 검토할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스폰서는 자신이 스템텍의 직원이나 대리인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며, 그 어떤 경우에도 독립 계약자 신분을 유지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표해야 합니다. 스폰서는 자신의 다운라인에 있는 다른 IBP('배치 스폰서') 밑에 새로운 IBP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스폰서가 새로운 IBP 밑에 신규 IBP를 배치하고자 하는 경우, 신규 IBP의 신청서 제출 후 해당 월 이내에 '나의 대기실-Waiting Room'(백오피스의 '나의 조직'에 위치)을 통해 완료해야 합니다.

### 3.2 - 지속적인 교육

모든 IBP는 자신의 다운라인이 스템텍 IBP 활동을 올바르게 전개할 수 있도록 선의의 지원 및 교육지원 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자신의 다운라인 그룹에 있는 IBP와 지속적인 연락 및 커뮤니케이션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스폰서는 신규 IBP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스템텍의 제품 지식, 판매 테크닉(판매 마무리 방법, 주문 양식 및 영수증 준비 포함), 스템텍 사업기회, 회사의 방침 및 절차를 포함한 준거 문서를 준수하는 것과 관련하여 트레이닝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다운라인 IBP와의 커뮤니케이션과 트레이닝은 방침 및 절차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 3.3 - 지속적인 판매 활동

스스템텍 IBP는 직급과 관계없이 자신이 직접 또는 고객 및 다운라인 IBP를 개발하여 제품의 판매 및 서비스 제공 활동을 지속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 3.4 - 다운라인 그룹과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비방 금지)

스스템텍 IBP에게 최상의 제품, 보상플랜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스템텍도 현장에서 활동하는 IBP로부터 생산적인 비판이나 아이디어를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하는 경우 불만사항이나 의견을 회사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템텍, 스템텍 제품이나 보상플랜과 관련하여 비즈니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부정적인 진술은 다른 스템텍 IBP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 이외의 목적에는 이바지하지 못합니다. 또한 경쟁업체를 폄하하는 행위도 직판산업에 대한 평판을 저하시키고 궁극적으로 스템텍에 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스템텍은 모든 스템텍 IBP가 스템텍과 스템텍 제품은 물론 경쟁회사나 경쟁회사의 제품을 폄하하는 행위를 삼가고, 다운라인 IBP에게 모범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다운라인 그룹의 IBP들이 제품 및 비즈니스와 관련된 부적절한 주장을 하거나 불법 또는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스템텍은 본 조항과 관련하여 스템텍에 해롭거나 파괴적인 행위를 하는 IBP에 대해서는 징계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3.5 - 방침 및 절차 위반 사례 신고

스스템텍 IBP는 다른 IBP의 방침 및 절차 위반 사례를 목격하는 경우 스템텍 윤리강령팀에 서면으로 위반 사례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위반 행위가 발생한 날짜, 위반 횟수, 관련 당사자 및 기타 입증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3.6 - 추천 스폰서/배치 스폰서의 변경**

스팀택의 사업기회와 다운라인 그룹을 보호하고, IBP의 활동에 대한 안전을 위해 스팀택은 스폰서의 변경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스폰서 라인의 무결성을 유지하는 일은 모든 IBP와 다운라인 그룹의 성공에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스팀택 IBP 자격을 다른 스폰서에게 이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최초 등록된 해당 월 이내에 '나의 대기실-Waiting Room'에서 IBP를 배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IBP는 자신의 스폰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스폰서 변경 양식'을 작성하여 IBP 서비스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스폰서 변경 양식은 이전을 요청한 IBP의 7대 업라인 IBP들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스팀택에 있습니다.

기망에 의한 후원과 같은 부적절한 상황을 제외하고, 스폰서의 변경에 따른 다운라인 IBP의 이동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기망에 의한 계약 체결의 이유로 스폰서 이전을 요청하는 경우, 스팀택이 IBP 신청서/계약을 승인한 후 30일 이내에 스폰서 변경 양식을 IBP 서비스 부서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스폰서를 이전하는 IBP의 다운라인의 이동은 전적으로 스팀택의 재량에 따르며 모든 스폰서 이동 신청은 건별로 별도의 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 **3.7 - 교차 후원**

교차 후원을 하거나 시도하는 일은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교차 후원'은 스팀택에 기존 고객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IBP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다른 스폰서 라인의 IBP, 또는 지난 6개월 이내에 그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IBP를 등록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배우자나 친척의 개인명의, 차명, 공동사업자, 차명의 ID 번호를 활용하여 본 조항을 우회하고자 하는 어떠한 행위도 금지합니다.

교차 후원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이를 즉각 회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스팀택은 교차 후원을 통해 그룹을 변경한 IBP 또는 교차 후원을 조장하거나 가담한 IBP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스팀택은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규정을 위반한 IBP의 다운라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래의 다운라인 그룹으로 복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팀택은 교차 후원된 IBP의 다운라인 그룹을 이동시켜야 하는 의무를 갖지 않으며, 궁극적인 처분은 스팀택의 재량에 따라 모든 상황을 건별로 검토합니다. 스팀택의 IBP는 교차 후원된 IBP 다운라인 그룹의 처분과 관련하여 스팀택에 대한 클레임이나 소송권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3.8 - 자발적 계약 해지 및 재등록**

스팀택 IBP는 자신의 IBP 계약을 자발적으로 해지한 후, 6개월 동안 비활동 상태(소비 또는 판매를 위한 스팀택 제품의 구매, 제품의 판매, 후원 활동, 세미나 참가, 기타 IBP 활동 참여를 포함한 모든 IBP 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그룹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6개월 동안의 비활동 기간이 지난 IBP는 새로운 스폰서 하에서 IBP로 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팀택은 경우에 따라 6개월 규정을 취소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 **3.9 - IBP 사망으로 인한 자격 상속**

IBP가 사망하는 경우 해당 IBP 자격은 본 조항을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사망한 IBP의 유언이나 기타 상속 문서에 따라 사망자의 승계인에게 이전됩니다. IBP 자격의 상속 시, 적절한 법적 증빙 서류를 스팀택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IBP는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유언이나 상속 문서를 준비해야 하며, 여기에는 스팀택 IBP의 업무 취급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유언에 의한 스팀택 IBP 자격의 상속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승계인이 동 이전의 적법성을 증명하기 위해 스템텍에 다음 법률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1. 사망 확인서
2. 스템텍 IBP 자격에 대한 권리를 증명하는 유언 또는 기타 문서의 공증서 사본
3. 변경 내용이 표기되어 작성한 IBP 계약서

IBP 자격 승계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습니다.

1. 계약서 상의 내용 준수
2. 사망한 IBP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자격 조건 충족
3. 수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IBP 자격은 수해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신탁의 형태를 취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신탁인은 신탁 절차를 위해 스템텍에 유효한 관련 법률에 의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일 또는 복수 IBP가 상속을 통해 또 다른 IBP 자격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는 경우, 1 가구 복수 IBP 자격 금지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본 방침 및 절차 2.11에 대한 예외 적용 신청은 상속을 통해 2번째 비즈니스에 대한 권리를 획득한 후 30일 이내에 스템텍 IBP 서비스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3.10 - 스템텍 IBP 사이의 계약**

스스템텍은 후원수당의 지급 또는 스폰서 자격의 배분과 관련하여 스템텍 독립 IBP 간에 체결한 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3.11 - 비밀준수 및 조직도 리포트**

모든 조직도와 다운라인 활동 리포트 및 동 리포트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는 비밀정보로서 스템텍의 독점 정보이자 영업 비밀입니다. 조직도와 다운라인 활동 리포트는 대외비로 제공되며 스템텍 IBP 개발 및 다운라인 그룹의 비즈니스를 지원할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IBP와 스템텍은 본 비밀준수 및 비 공개 조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조직도와 다운라인 활동 리포트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 동의해야 합니다. 스템텍은 최소 비용으로 IBP에게 조직도와 다운라인 활동 리포트를 제공합니다. 본 3.11 항은 계약 해지 후에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스템텍 IBP는 자신은 물론 특정 개인이나 비즈니스 단체를 위해 다음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1. 제3자에게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조직도 또는 다운라인 활동 리포트에 포함된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
2. 스템텍 IBP 활동을 프로모션하거나 스템텍 제품/서비스의 판매 지원 이외의 목적으로 동 정보를 사용하는 행위
3. 리포트 상에 있는 다른 IBP나 소매 고객을 리크루팅하거나 유인하는 행위
4. 다른 사람에게 스템텍과의 비즈니스 관계를 변경시키도록 영향을 발휘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나 시도

회사가 요구하는 경우, 현 IBP나 이전 IBP는 조직도 또는 다운라인 활동 리포트 원본 및 사본을 스템텍에 반환해야 합니다.

### **3.12 - 회사에 대한 존중**

스스템텍은 IBP에게 최상의 제품, 사업기회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IBP의 건설적인 비판과 의견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 경우 IBP는 IBP 서비스 부서를 통해 서면으로 자신의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스템텍은 IBP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IBP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회사와 제품, 사업기회와 관련하여 IBP 활동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건설적인 아이디어, 의견이나 견해를 환영합니다. 그러나 다른 IBP의 비즈니스 활동을 저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스템텍 IBP는 다른 IBP를 포함한 제3자에게 스템텍 회사와 제품, 마케팅 프로그램, 경영자, 직원과 관련된 부정적, 경멸적 또는 비방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3.13 - 이혼으로 인한 스템텍 IBP 자격의 해지

스스템텍 IBP 자격은 이혼으로 인한 경우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통해 영향을 입은 당사자는 다른 스템텍 독립 IBP나 회사 관리자, 임원, 주주, 직원 및 에이전트가 논쟁이나 분쟁에 개입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 관련 당사자는 계약서에 따라 행동해야 하며, 회사 관리자, 임원, 주주, 직원, 에이전트에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치거나 다른 스템텍 IBP의 비즈니스나 수입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방식으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혼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관련 당사자는 그 누구도 독립 스템텍 IBP 자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IBP 서비스 부서가 이혼 관련된 통지를 접수하는 경우, 모든 당사자가 요청서에 서명하지 않는 경우 IBP 자격과 관련한 어떤 행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혼의 경우, 최종 명령이나 법원 결정 서류를 통해 스템텍 IBP 자격을 유지할 개인이 지정되어야 합니다. 스템텍 IBP 자격은 어떤 형태로든 분리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영향을 받은 스템텍 IBP 밑의 기존 스폰서 라인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른 당사자에게 스템텍 IBP 자격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한 이전 배우자는 (a)자유롭게 기존의 스폰서 밑에서 신규 스템텍 IBP로 신청하거나, (b)자신이 선택하는 스폰서 밑에서 신규 IBP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인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3.8 및 9.2 항에 명시된 6개월 대기 기간은 이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4 - 후원활동 & 교육지원

### 4.1 - 일반 규정

모든 IBP는 스템텍과 스템텍 상품의 평판을 보호하고 고양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스템텍의 사업기회, 제품/서비스에 대한 마케팅 및 프로모션은 대중의 이익에 부응해야 하며, 무례하거나 기만적이며, 다른 사람을 호도하거나 비윤리적인 행동이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템텍의 IBP는 스템텍 제품과 사업기회를 프로모션하기 위해 스템텍이 제작한 마케팅 및 지원 자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스템텍은 제품, 제품 라벨, 사업기회 및 프로모션 자료를 개발함에 있어 관련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스템텍이 모든 측면이 공평하고, 정직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고려합니다. 만일 스템텍 IBP가 자신의 마케팅 및 프로모션 자료(인터넷 광고 포함)를 자체 제작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해당 자료의 무결성이나 선량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스템텍 IBP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를 위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법규 위반은 모든 IBP 그룹 전체와 스템텍 사업기회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템텍 IBP는 스템텍의 서면 승낙 없이 자체 자료, 광고, 마케팅 자료, 오디오, 비디오, 프로모션 자료, 인터넷 웹사이트 등을 제작할 수 없습니다.

스스템텍은 스템텍의 IBP가 다른 스템텍 IBP를 대상으로 판매보조도구를 제작,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웹사이트 또는 “비즈니스 시스템” 포함). 따라서 모든 스템텍 IBP는 스템텍 비즈니스를 보다 성공적으로 만들어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는 제품/서비스, 물품 또는 판매보조도구를 다른 스템텍 IBP에게 판매하거나 판매를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스템텍의 모든 IBP는 스템텍이 제작한 품목만을 다른 IBP와 잠재 고객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4.2 - 상표 및 저작권

스스템텍 IBP를 포함한 그 어떤 사람도 스템텍의 사전 서면 허락 없이 스템텍 및 스템텍 제품명을 포함하여 회사 상호, 상표, 의상, 심볼이나 기타 파생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도메인명이나 이메일 주소에 사용된 표식도 포함됩니다.

스텝 IBP는 회사의 서면 허락 없이는 개인 용도, 판매 또는 유통 목적으로 스텝이 주최하거나 스텝의 직원이 연사로 참가하는 녹음/녹화된 이벤트를 재 제작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전화 통화, 음성 메시지 및 스피치를 포함합니다. 스텝 IBP는 또한 판매 또는 개인 사용을 목적으로 회사가 제작한 오디오 및 비디오 프레젠테이션을 재생/복제할 수 없습니다.

### **4.3 - 자료**

모든 스텝 IBP는 스텝 제품, 사업기회 또는 스텝 보상플랜을 소개함에 있어 공식적인 스텝 자료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텝이 제공하는 스텝 브로셔, 삽입 자료 및 기타 판매보조물은 스텝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며, 스텝의 명백한 서면 허락 없이는 재생, 복제 또는 재 간행할 수 없습니다.

### **4.4 - 다중 리크루팅, 판매 테크닉 및 인터넷 웹사이트의 사용**

4항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스텝 IBP는 자신의 스텝 IBP 활동과 관련하여 원치 않는 팩스, 대량 메일, 이메일이나 ‘스팸’을 활용하거나 전송해서는 안 됩니다. ‘원치 않는 팩스’와 ‘원치 않는 이메일’이라는 용어는 스텝, 스텝의 제품, 사업기회, 기타 스텝에 대한 광고 또는 홍보 자료나 정보를 전화나 팩스 또는 전자 메일을 통해 무작위로 전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 용어는 다음 대상에게 보내는 팩스나 이메일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1. 사전에 명백한 초대나 허락을 득한 사람
2. IBP가 이미 확립된 비즈니스 또는 개인적인 관계를 구축한 사람  
‘확립된 비즈니스 또는 개인 관계’라는 용어는 IBP나 제안한 스텝 제품과 관련하여 질의, 신청, 구매 또는 거래 관계를 맺은 사람, 양 당사자 사이에서 이미 구축된 관계가 해지되지 않았거나, 개인적 또는 가족 관계를 바탕으로 자발적인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형성되어 있는 기존의 관계를 뜻합니다.

인터넷은 지리적 한계(국내 또는 해외)를 두지 않는 반면, 인터넷을 통한 정보는 특정 국가에서는 합법적일 수 있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IBP 활동을 홍보하기 위해 인터넷 웹사이트를 활용하거나 시도하는 IBP는 스텝이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복제 웹사이트와 쇼핑몰을 통해 홍보 활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 **4.5 - 카탈로그 및 잡지 광고 및 프로모션**

스텝이 제작하는 카탈로그나 잡지가 아닌 다른 통신판매 카탈로그 또는 잡지를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카탈로그를 통해 스텝 제품, 사업기회 및 서비스를 프로모션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스텝 제품은 스텝이 제작하거나 서면으로 승인한 자료만을 사용하여 프로모션 및 광고해야 합니다.

### **4.6 - 인쇄물을 통한 광고**

플라이어, 브로셔, 디스플레이 광고, 간판, 자동차 윈도 등을 포함하여 인쇄 매체를 통한 광고에는 스텝이 승인한 자료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스텝이 제작하지 않은 광고물에서는 스텝의 상표나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자료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스텝이 승인한 자료는 백오피스(www.stemtech.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텝 IBP는 스텝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제3자의 자료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스텝 IBP는 다른 스텝 IBP에게 제3자의 판매 도구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시도할 수 없습니다.

## **4.7 - 전화번호부 등록 및 디스플레이 광고**

이그제큐티브 디렉터 자격을 달성하고 6개월 이상 적극적으로 스템텍 IBP로 활동하고 있는 스템텍 독립 IBP는 전화번호부에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IBP 이름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주)스스템텍 독립 IBP’ 또는 ‘(주)스스템텍 제품IBP’. 기타 표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4.8 - 전자 매체**

스스템텍 독립 IBP는 스템텍이 제공하지 않는 웹사이트, 라디오, 텔레비전이나 케이블 TV를 통한 광고 또는 자료를 스템텍 회사, 스템텍 사업기회 및 제품을 홍보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스스템텍 제품과 스템텍 사업기회는 스템텍의 공식 자료와 복제 웹사이트를 통해서만 소개할 수 있습니다. 스템텍이 제공하는 브로셔, 삽입 자료와 기타 판매보조 자료는 스템텍의 명백한 서면 승낙 없이는 전자적으로 재생, 복제 또는 재인쇄할 수 없습니다. 제3자 소핑몰을 활용하여 IBP 개인이 제작한 웹사이트 및 제3자가 제작한 e-북의 사용도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본 방침 및 절차의 어떠한 조항도 IBP가 자신의 다운라인과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이메일을 사용하는 권한을 제한하지 못합니다.

## **4.9 - 보증 홍보**

스스템텍의 관리자, 이사, 주주, 직원 또는 대리인이나 그들과 관계가 있는 사람의 이름은 스템텍의 명백한 사전 서면 승낙 없이는 어떠한 형태의 광고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4.10 - 언론매체 및 언론매체의 취재**

스스템텍 IBP는 스템텍을 대신하여 언론매체를 상대로 대변인 자격을 갖지 못합니다. IBP는 스템텍, 스템텍 사업기회와 스템텍 제품/서비스, 스템텍의 독립 IBP 자격과 관련하여 언론매체에 접촉하거나 언론매체의 질의에 응답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언론매체로부터 질의를 받는 경우 스템텍의 마케팅 부서로 즉시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본 정책은 올바른 회사 이미지는 물론, 정확하고 일관적인 정보를 일반 대중에게 제공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 **4.11 - 스템텍 직원 사칭**

스스템텍 IBP는 스템텍의 직원을 사칭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전화 응대 시 ‘스스템텍’이나 ‘(주)스스템텍코리아’라는 말을 사용하거나 발신자로 하여금 자신이 스템텍 사무실에 연결이 되거나 회사의 임직원과 대화를 하고 있다고 믿도록 하는 방법으로 전화에 응대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스템텍 IBP는 전화나 음성 메시지에 상대방이 스템텍 사무실에 연결되었거나 회사의 임직원과 대화를 하고 있다고 믿도록 하는 방법으로 인사말을 녹음해서는 안 됩니다.

## **4.12 - 텔레마케팅**

스스템텍 독립 IBP는 스템텍 사업기회, 제품/서비스를 프로모션 하기 위해 텔레마케팅 기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텔레마케팅에는 자동 다이얼 시스템, 텔레마케팅 사무실이나 조직적인 텔레마케팅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 **5 - 스템텍 IBP 자격 및 보상**

본 방침 및 절차의 목적 상, 보상이라는 용어는 스템텍의 보상플랜을 통해 스템텍 IBP에게 제공되는 모든 보상을 뜻합니다.

## 5.1 - IBP 계약서

스팀텍 IBP 자격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가 IBP 계약서에 서명하고 이를 스팀텍이 접수하여 승인할 때까지는 어떠한 보상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5.2 - 영업 상의 월별 기준

보상 및 IBP 직급은 월 단위로 계산됩니다. 단, 매월 1일이 주말이나 법정 공휴일인 경우 온라인 제품 주문을 제외하고는 해당 월의 첫 번째 영업일을 첫째 날로 간주합니다. 만일 특정월의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법정 공휴일인 경우 온라인 제품 주문을 제외하고는 해당 월의 마지막 영업일을 마지막 날로 간주합니다.

## 5.3 - 후원수당 지급일

후원수당은 수당이 산정된 달의 익월 16일 처리하여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8월 실적에 대한 후원수당은 9월 16일 사이에 지급됩니다. 시스템에는 월간 커미션이 처리되면 직급 산정이 반영됩니다.

## 5.4 - 후원수당 자격

스팀텍 IBP는 스팀텍 보상플랜에 따른 보상 자격을 달성하기 위해 액티브 자격을 유지하고 계약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스팀텍은 IBP가 계약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보상플랜에 따라 IBP에게 커미션과 기타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스팀텍이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최소 금액은 10,000원입니다. IBP의 수입이 10,000원 이상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최소 지급액에 도달할 때까지 금액을 누적시켜, 계좌 이체를 통해 후원수당을 지급합니다.

## 5.5 - 제품 및 마케팅 자료 반품과 관련한 조정

스팀텍 IBP는 최종 소비자에 대한 제품/서비스의 실제 판매 실적을 기준으로 보상을 제공 받습니다. 제품이 반품되는 경우, 반품된 제품에 대해 기지급된 보상은 반품이 이루어진 달로부터 지급된 보상액이 보전할 때까지 매 보상 주기마다 공제됩니다.

## 5.6 - 오류 및 누락

스팀텍 IBP가 보상, 조직도, 다운라인 활동 리포트나 비용 처리와 관련하여 오류가 있다고 믿거나 질문이 있는 경우, 오류나 문제를 인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IBP 서비스 부서에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스팀텍은 60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은 오류, 누락 또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6 - 국제사업

## 6.1 - 국제 마케팅 활동

제품 승인이나 등록과 관련한 외국 법률의 준수, 성분, 라벨 표시 및 포장과 관련된 규정, 주의 표시, 지적재산권의 보호, 관습, 세금 및 관련법의 준수, 제품 및 수입 주장, 자료 내용 및 언어 규정 등을 포함한 중요한 법적, 세법상의 문제로 인해 스팀텍은 회사가 진출해 있는 국가의 잠재 고객과 IBP에게 제품/서비스를 판매하고 스팀텍 사업기회를 소개하는 활동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스팀텍이 아직 진출해 있지 않은 지역에서 소수의 IBP에게 비즈니스 활동을 전개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모든 IBP가 평등하게 국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원칙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스팀텍 IBP는 스팀텍의 뉴스레터나 기타 공식 자료에 소개하는 승인된 국가에서만 스팀텍 제품/서비스를

판매하고 신규 사업자를 후원할 수 있습니다. 스템텍 제품이나 마케팅 자료는 외국으로 배송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스템텍 IBP는 자신의 국가에서만 스템텍 제품이나 마케팅 자료를 판매, 제공, 전송 또는 배포할 수 있습니다. 스템텍 IBP는 승인 받지 않은 국가에서는 다음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1. 판매, 등록 또는 트레이닝 미팅
2. 잠재 고객이나 IBP를 등록하거나 등록을 시도하는 행위
3. 스템텍 제품의 판매, 다운라인 그룹의 구축 및 스템텍 사업기회를 프로모션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기타 행위

## **6.2 - 해외에서의 판매 및 비즈니스 구축 활동**

스스템텍 IBP는 스템텍이 공식적으로 비즈니스를 개시했다고 발표하는 국가에서만 스템텍 제품을 판매하고 사업기회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 스템텍은 IBP에게 회사 웹사이트, 뉴스레터나 기타 공식적인 자료를 통해 비즈니스를 전개할 수 있는 국가에 대해 통지합니다. 스템텍 IBP는 스템텍이 공식 발표한 국가 이외의 지역에서는 스템텍 제품(소매 또는 도매)을 판매 또는 배송할 수 없습니다.

## **7 - 제품의 구매 및 판매, 대금 지불 및 배송**

### **7.1 - 과도한 재고 구매의 금지**

스스템텍 IBP는 스템텍이나 자신의 1대 업라인 스폰서로부터 스템텍 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스템텍 IBP는 스템텍 제품이나 마케팅 자료 재고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단, 재고 유지는 고객의 주문에 응대하거나 신규 IBP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소매 판매와 다운라인 그룹의 구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스템텍 IBP는 재고와 관련하여 자신의 책임으로 의사를 결정해야 합니다.

스스템텍은 스템텍 보상플랜, 컨테스트, 보너스나 스템텍이 제공하는 기타 보상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되는 보상이나 승급 자격 달성 목적을 위해 합리적인 범위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 **7.2 - 교차라인 및 다운라인에 대한 판매**

스스템텍 IBP는 제품의 구매와 관련된 실적 점수를 부여받기 위해 회사로부터 직접 제품을 구매해야 합니다. 스템텍 IBP가 다른 스템텍 IBP로부터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해당 구매에 대해 실적을 인정받지 못하며, 반품 정책의 혜택에서도 제외됩니다.

### **7.3 - 제품의 판매**

스스템텍의 보상플랜은 스템텍 제품/서비스를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스템텍 IBP는 보상 및 승급 자격을 위해 개인 또는 다운라인 그룹의 소매 실적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스템텍 IBP는 스템텍 보상플랜에 명시되어 있는 바에 따라 자신의 직급과 관련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개인실적점수(PPV)와 개인그룹실적점수(GPV)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7.4 - 제품 대금 지불**

스스템텍으로부터 직접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제품 주문과 동시에 제품 대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 **7.5 - 신용카드 및 당좌계좌의 3자 사용 제한**

스스템텍 IBP는 다른 IBP나 소매 고객을 등록시키거나, 그들을 위해 회사로부터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자신의

신용카드나 당좌계좌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IBP 신청서/계약서 상에 명기된 IBP만이 자신의 신용카드나 당좌계좌를 통해 제품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카드를 사용할 경우 카드 사용에 대한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7.6 - 제품 및 마케팅 자료의 정시 인도**

스템텍은 주문을 접수한 후 2 영업일 이내에 스템텍 제품 및 마케팅 자료 배송 절차를 처리하며, 배송은 일반 택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별도의 요청이 없는 경우 주문은 배송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배송됩니다. 운송업자를 통한 배송은 물품의 수령을 입증하기 위한 서명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스템텍이 계약을 체결한 운송업자가 아닌 다른 배송업자를 통한 배송 요청의 경우 추가적인 비용이 부과됩니다. 오토십 주문은 주문서 양식에 표기된 IBP 또는 고객의 주소로 배송됩니다.

## **7.7 - 제품의 손상**

스템텍 IBP는 제품을 인도받는 즉시 손상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송업자가 스템텍으로부터 제품을 인도받은 후에 발생한 제품 및 포장의 손상 및 훼손은 배송업자에 책임이 있습니다. 만일 IBP가 손상된 상품을 인도받는 경우, 손상된 제품을 인도받은 시점에서 30일 이내에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배송업자로부터 제품 인도
2. IBP 서비스 부서에 전화하여 담당자에게 관련 정보 전달  
: 손상의 유형/정도, 배송 주소, ID 번호, IBP 서비스 담당자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정보
3. IBP 서비스 담당자가 배송업자에게 손상된 제품에 대해 통지하고 제품 픽업 및 검수 요구
4. IBP 서비스 담당자가 손상된 제품에 대해 교체 또는 재배송 등을 포함한 필요 조치 시행

이상의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경우 손상된 제품의 교체에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7.8 - 가격 변경**

스템텍은 모든 제품, 마케팅 자료에 대한 가격을 변경할 권리를 보유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사전 통지 없이 제품과 관련된 실적 점수 또는 보너스 점수를 변경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 **7.9 - 소매 가격 및 영수증**

스템텍은 권장소비자가격을 가이드 라인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스템텍 독립 IBP는 소비자에게 소매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모든 스템텍 IBP는 제품 판매 시 반드시 스템텍 판매 영수증 사본 2장을 소매 고객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스템텍 IBP는 모든 소매 판매 영수증을 2년 동안 보유해야 하며 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제시해야 합니다.

## **7.10 - 소득세 및 판매세**

모든 IBP는 소득세 및 판매세가 발생하는 시점에 납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모든 소득/원천징수 관련 정보 제공에 필수적인 정보입니다.

### **7.10.1 - 소득세**

IBP는 독립사업자로서 회사는 IBP의 보너스에서 해당되는 세금을 공제합니다. 회계 연도 종료 시 회사는 IBP와 IBP의 관련 과세당국에 법률이 요구하는 모든 소득/원천징수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 7.10.2 - 판매세

IBP는 제품의 IBP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IBP의 제품 주문서 양식에 기재되어 있는 IBP 가격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제품 주문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목적상, IBP가 하기의 범주 중 한가지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기를 권장합니다.

1. 해당 연도의 1월 1일 및 7월 1일부터 6개월 이내에, IBP가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12,000,000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한 경우
2. IBP가 별개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3. IBP가 최종 소매 고객이 아닌 당사자들과 도매 또는 기타 비소매 거래를 하는 경우

IBP가 상기의 어떠한 범주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목적상, IBP는 스템텍에 세금 관리자 지정에 관한 통지 및 유효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7.11 - 소매점

스스템텍 제품은 슈퍼마켓, 식품점, 드럭 스토어, 약국, 건강식품 판매점 또는 기타 형태의 주요/체인 소매점을 포함하여 주요/체인 소매점에서 판매, 또는 디스플레이 할 수 없습니다. 스템텍 제품은 건강 스파와 같은 개인 클럽과 병원이나 뷰티살롱과 같이 사전 약속을 통해 이루어지는 업소에서만 판매, 디스플레이 할 수 있습니다.

스스템텍 제품은 현금등록기, 푸드바나 기타 유사한 환경에서 스템텍 IBP의 뒤나 옆에 비치할 수 있습니다(IBP가 제품 지식을 제공하고 질문에 대해 응답하는 경우).

스스템텍 제품은 쇼윈도처럼 일반인들의 눈에 띄는 곳에 디스플레이 할 수 없으며, 사업장 내부로부터 고객이 보일 수 있는 방식으로 디스플레이 해야 합니다. 스템텍 IBP는 매점 또는 베톡시장과 같은 지정된 장소에서 스템텍 제품을 판매, 전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IBP가 직접 제품을 소개해야 합니다.

본 정책은 매점 주인이 스템텍 IBP가 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점 주인이 스템텍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장소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매점 주인은 영업시간 중에 각 장소에 액티브 상태의 스템텍 IBP를 배치하여 스템텍 제품을 소개하고, 잠재 소매 고객이나 잠재 IBP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질문에 답변하거나 스템텍 사업기회에 대해 소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베이, 페이스북, 마이스페이스, 유튜브, 크레이그즈 리스트와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경매나 판매, 또는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를 통해서도 스템텍 제품을 판매하거나 스템텍 사업기회를 프로모션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스템텍 IBP이외의 사람에게 제품을 공급하는 IBP에게는 본 방침 및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여 징계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7.12 - 전시 공간

스스템텍 IBP는 건강 박람회, 뉴트리션 전시회나 비즈니스 엑스포와 같은 특별 이벤트에서 전시 공간을 임대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IBP가 전시 공간을 임대하는 경우, 전시 공간을 임대하지 않은 다른 IBP들은 이벤트가 이루어지는 시설의 내부나 외부 주변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 것이 금지되며, 다른 전시자나 방문객에게 스템텍 제품을 전시하거나 소개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단, 이 경우 이벤트 프로모터가 허락하는 경우 스템텍은 두 명 이상의 IBP가 동일한 이벤트에서 전시 공간을 임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전시 공간의 임대와 관련한 기준은 이벤트 프로모터의 기준에 따릅니다. 따라서 임대료 또는 서비스를 포함하여 그들이 제시한 조건 하에서 자신의 공간을 임대하는 것은 이벤트 프로모터의 전적인 재량에 따릅니다. 이 정책에 대한 위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스템텍은 전시 공간을 임대하는 IBP가 먼저 이벤트 프로모터에 연락을 취하여 전시 공간 임대 조건, 임차인의 지불 조건, 다른 IBP의 복수 임대 가능성과 다른 스템텍 IBP가 이미 전시 공간을 임대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 임대한 전시 공간과 관련한 분쟁은 IBP와 이벤트 프로모터

당사자들 사이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다른 IBP가 임대한 공간을 침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먼저 이벤트 프로모터에게 문의를 하여 다른 스템텍 IBP가 이미 전시 공간을 임대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7.13 - 일반주문 정책**

부정확하거나 유효하지 않은 지불과 관련한 우편 주문에 대해 스템텍은 다른 지불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전화 또는 우편으로 해당 IBP에 연락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촉 시도가 5 영업일 동안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주문은 처리되지 않고 취소됩니다. 스템텍은 환불 조건의 제품 주문(C.O.D)을 인정하지 않으며, 최소 주문 규정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품/서비스와 마케팅 자료를 결합한 주문도 가능합니다.

### **7.14 - 이월주문 정책**

스스템텍은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주문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배송합니다. 그러나 주문된 품목에 대한 재고가 소진된 경우, 이를 이월주문으로 처리하여 추가적인 재고가 확보될 때 이를 배송합니다. IBP는 제품이 단종되었음을 알리는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월주문 제품에 대해 PPV를 제공받습니다. 스템텍은 주문된 품목이 이월주문 대상이어서 주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배송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예상 배송일과 관련한 정보와 함께 IBP나 소매 고객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소매 고객이나 IBP는 이월주문된 품목에 대해 주문을 취소하거나, 환불 또는 제품 교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IBP의 PPV는 환불이 이루어진 달의 실적에서 차감됩니다.

### **7.15 - 주문의 확인**

IBP 또는 제품 수령인은 반드시 인도받은 제품이 송장의 목록과 일치하고 제품에 하자가 없는지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배송된 제품의 불일치나 손상에 대해 배송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 IBP가 행사할 수 있는 시정 요구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7.16 - 보증금**

IBP는 제품 인도 시점을 제외하고는 개인 소매 고객으로부터 제품 판매와 관련하여 어떠한 금전도 제공받거나 수락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IBP는 향후 제품 인도를 전제로 보증금 명목으로 소매 고객으로부터 금전을 수수해서는 안 됩니다.

## **8 - 제품의 반품 및 환불**

### **8.1 - 소매 고객에 의한 반품**

불만족한 IBP의 소매 고객에 대한 환불은 IBP가 책임져야 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객들은 주문 취소 및 반품 또는 환불을 할 수 있는 최소 14일의 기간을 보유하고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IBP가 소매 판매에 대한 교체 제품을 수령하고자 한다면, 고객이 환불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소매 고객의 확인서와 함께 회사에 소매 판매 청구서를 송부해야 합니다.

IBP의 허위진술, IBP가 환불 불이행의 결과 또는 회사 환불 방침에 관하여 제공된 부정확한 정보로 인하여 회사가 소매 고객에게 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 회사는 30일 이내에 향후 보너스에서 환불된 금액을 징수합니다. 지급된 금액을 전액 수령할 수 없는 경우, IBP 계약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



## 8.2 - IBP에 의한 반품 (자가소비를 위해 구매한 제품)

IBP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계약에 대한 청약철회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IBP가 반품을 신청할 경우 공급일로부터 1월 경과 후 2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그 제품 대금의 5%, 2월 경과 후 3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제품 대금의 7%에 각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환불합니다.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재화 등을 훼손한 경우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반품이 불가하고, 그 경우 IBP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을 해지하는 IBP는 반품 제품의 해당 주문번호 및 구매시점에 지급이 이루어졌다는 증빙을 제출함으로써 반드시 반품되는 제품들을 본인이 구매하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개인적 제품주문과 관련이 없는 반품된 제품들은 환불될 수 없으며, 반품에 따른 환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품이 회사에 반환되어야 하고, 회사는 제품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을 합니다.

상위라인 IBP가 인센티브 또는 보너스를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제품들 중 환불을 목적으로 반품된 제품들은 인센티브 자격 충족 및 획득된 보너스에 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입니다. 회사는 환불된 제품에 대하여 지급된 보너스를 향후 보너스에서 공제합니다.

## 8.3 - 반품 절차, 반품 제품 승인

1. 스텝 제품 또는 마케팅 자료의 반품 이전에, 스텝 IBP는 스텝 IBP 서비스 부서에 통지를 통해 제품 반품에 대한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스텝 IBP 서비스 부서는 해당 IBP에 반품인증양식을 발송하고, 해당 IBP가 해당 양식을 작성하여 다시 스텝 IBP 서비스 부서에 발송해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는 원하는 반품 제품이나 마케팅 자료를 보내서는 안 됩니다.
2. 반품인증양식을 접수한 스텝 IBP 서비스 부서는 해당 IBP에게 인증번호와 배송 라벨을 포함한 포장 가이드라인에 대해 통지합니다. 모든 배송 라벨에 반품인증번호가 없는 경우 반품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3. 반품인증번호 및 포장 가이드라인에 대해 통지 받은 IBP는 반품인증양식에 열거된 제품만을 반품해야 합니다.
4. 반품된 제품의 검사를 마치면 스텝은 환불 절차를 개시하여 반품 제품을 접수한 3영업일 내에 환불이 이루어집니다. 반품된 제품이 재사용 및 재판매가 어려운 경우, 스텝은 반품 제품에 대한 배송 비용을 요청하는 통지와 함께 해당 물품을 반송합니다. 스텝이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스텝의 통지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클레임을 제기하지 않으면 폐기 처분됩니다.
5. 스텝의 반품인증을 거치지 않고 스텝 제품을 반품하는 IBP는 회사로부터 이에 대해 통지를 받게 되며 이에 따라 환불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25

## 9 - 계약 해지 및 비갱신

### 9.1 - 비자발적 해지

IBP가 스텝 재량에 따른 수정안을 포함하여 계약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IBP 계약의 비자발적 해지는 포함하여 10.2 항에 명시된 제재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지는 IBP에게 우편, 이메일, 팩스 또는 특송을 통해 통지가 이루어진 날, 또는 IBP가 실제로 해지 통지를 접수한 날짜 중 먼저 도래한 날짜에 효력을 발생합니다. IBP 계약이 스텝에 의해 해지된 경우, 해당 IBP는 독립 IBP 자격을 재신청하거나 IBP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9.2 - 자발적 해지

IBP는 이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IBP 서비스 부서에 계약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함으로써 IBP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서면 통지는 주 IBP와 2차 IBP 서명, 이름, 주소 및 ID 번호를 포함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IBP는 스템텍 독립 IBP 자격을 재신청하거나 스템텍 독립 IBP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6개월 동안의 대기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 9.3 - 비갱신

IBP는 등록·갱신일에 IBP 계약을 갱신하지 않음으로써 IBP 계약을 자발적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IBP는 스템텍 독립 IBP 자격을 재신청하거나 스템텍 독립 IBP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6개월 동안의 대기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스템텍은 해당 IBP를 멤버나 기타 형태의 소매고객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 9.4 - 비활동으로 인한 해지

IBP가 스템텍 보상플랜에 규정된 PPV를 6개월 연속 창출하지 못하는 경우 활동 부족으로 인해 자격이 해지됩니다. 이 경우 해당 IBP가 멤버로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자격을 요청하는 경우 스템텍은 재량에 따라 멤버나 기타 형태의 소매고객으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 9.5 - 해지 또는 비갱신의 효력

자발적 해지, 비자발적 해지, 또는 IBP 계약의 비갱신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IBP는 자기자신을 IBP라고 칭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제품의 판매, 리크루팅 및 스템텍과 관련된 마케팅 활동을 중단해야 하며, 계약이 해지된 IBP는 향후 스템텍이 제공하는 커미션, 보너스나 기타 형태의 보상에 대한 권리를 상실합니다. 또한, 재산권을 포함하여 기존 다운라인 그룹에 대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박탈당합니다.

26

# 10 - 분쟁의 해결 및 징계 조치

## 10.1 - 불평 불만

준거 문서를 위반하는 행위나 활동과 관련하여 다른 IBP에게 불편이나 불만이 있는 IBP는 먼저 자신의 스폰서에게 그 사실을 알려 다른 업라인 스폰서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위반 사항을 보고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IBP는 위반 행위가 발생한 후 30일 이내에 IBP 서비스 부서에 서면으로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IBP 서비스 부서가 해당 불만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스템텍 분쟁조정 위원회의 회부합니다.

## 10.2 - 징계 조치

IBP에 의한 계약 조건의 위반, 불법 또는 사기, 허위 또는 비윤리적 행위는 스템텍의 독자적인 재량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시정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서면 경고**, 일반 우편이나 등기 우편에 의한 주의 또는 경고
2. 계약 위반 IBP의 즉각적인 시정 조치 요구
3.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위반에 대해서는 IBP의 복제 웹사이트 사용 정지 조치
4. 벌금 부과(1주기 이상의 수당 지급 주기 동안 차감)
5. 계약 위반 IBP의 비자발적 자격 해지
6. 계약 조항이 허용되는 기타 조치

7. 1주기 이상의 수당 지급 주기 동안 계약 위반 IBP의 IBP 자격 정지
8. 스템텍이 계약 위반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조사하는 기간 동안 계약 위반 IBP에 대한 보상 지급 보류
9. 회사 재량에 따라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위반에 대해 커미션 몰수
10. 부분적 또는 전적으로 계약 위반자의 정책 위반이나 계약 위반에 의해 초래된 손상을 해결하기 위해 스템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치

스스템텍이 징계 조치를 취하거나, 조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계약을 위반한 IBP의 계약이 자발적으로 취소되거나 해지되는 경우 조사 기간 동안 지급이 보류된 보상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스템텍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금전적 및(또는) 강제 조치를 포함한 구제 조치를 위해 법적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11 - 일반 규정

### 11.1 - 제품의 효능 주장

스스템텍이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치료, 치유 또는 유효 효과와 관련한 주장(개인 체험담 포함)은 스템텍의 공식적인 자료에 포함된 것을 제외하고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스템텍 제품이 질병이 치유, 치료, 진단, 완화, 예방에 유용하다는 주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 11.2 - 수입에 대한 주장

잠재 IBP를 후원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인해 IBP는 수입이나 소득 잠재력에 대해 주장하고자 하는 충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신규 IBP가 자신의 결과가 다른 사람들이 성취한 결과보다 신속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 실망감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역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스템텍은 스템텍의 수입 잠재력이 다른 사람들의 소득에 대해 언급하지 않아도 충분히 매력적이라는 것을 굳건히 믿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직접판매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의한 수입 주장이나 체험담을 규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IBP는 통장 사본을 제공하거나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수입을 공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한 접근 방법은 수입이나 소득 공개와 관련한 법률에 따라서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IBP 본인은 물론 스템텍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스템텍 IBP는 수입 주장과 관련한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잠재 IBP에게 스템텍 사업기회를 소개하는 경우 수입에 대한 예측이나 주장을 해서는 안 되며, 통장의 사본, 은행 거래 내역, 세무 보고서나 기타 수입 관련 서류를 보여주는 일을 포함하여 자신의 수입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 11.3 - 백오피스 접근

스스템텍은 IBP에게 온라인 백오피스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백오피스는 IBP의 스템텍 비즈니스를 개발하고 스템텍 제품의 판매를 촉진시킬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독점 비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나 백오피스에 대한 접근은 IBP의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스템텍이 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지원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스템텍은 자체 재량에 따라 IBP의 백오피스 접근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 11.4 - 관할권 및 관할지역

중재 이외의 문제와 관련된 관할권 및 관할지역의 직접판매법에 따릅니다.

## **11.5 - 중재**

계약서나 계약의 위반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논쟁이나 클레임은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직판조합 및 소비자보호원)의 중재에 의해 해결하며, 중재자의 결정에 대한 판단은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법원을 통해 이루어 집니다. 모든 중재 절차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중재는 한국중재위원회가 제공하는 중재위원 중에서 직판산업에 법률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상업거래 전문가인 변호사를 중재위원으로 합니다. 중재와 관련된 각 당사자는 법률 비용과 중재 수수료를 포함하여 자신의 비용 및 경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중재인의 결정은 최종적인 효력을 발휘하며, 모든 당사자에게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필요한 경우 중재 결정을 관할권에 있는 법원의 판결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본 중재 조항은 IBP 계약의 해지나 종료 후에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본 방침 및 절차에 포함되어 있는 그 어떤 조항도 중재위원회 제소, 기타 법적 절차 또는 판결이나 중재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후나 진행되는 동안 스템텍이 관할권을 가진 법원으로부터 압류 영장, 가처분, 예비적 금지명령, 영구적 금지명령이나 스템텍이 자신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구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 **11.6 - 전체 계약**

본 방침 및 절차는 현재 조항 또는 향후 스템텍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수정안을 포함하여 계약서 및 매뉴얼에 통합되어 스템텍과 IBP 관계에 있는 모든 당사자 사이의 전체 계약을 구성합니다.